

링컨중 · 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링컨중·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근거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둔다.
- ② 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부서별 부장, 각 학년 부장, 해당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 ③ 교감은 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부장은 선도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선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제5조(시행) 선도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기록 및 사무처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담당 교사가 기록·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 과정을 거쳐 징계 처리 과정을 주관한다.

제7조(기능)

- ①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선도위원회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방안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제3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8조(조직 및 위원)

- 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둔다.
- ②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원위원 3인, 학부모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을 선출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4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 건축물 또는 학교 공공 기물을 파손했거나, 훼손했을 경우 해당 학생은 변상해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이나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 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폭력 신고 117
 3.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1588-7179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부(상담) 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①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교사에게 신청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③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허락된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④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용의 복장 및 교내생활지도) 용의 복장 및 교내생활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본교에서 정한 교복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 ② 교복은 동복, 하복, 춘추복으로 구분하고, 교복의 색상과 디자인 및 규격은 별도로 규정한다. 명찰 등 규정된 부착물은 반드시 정한 위치에 달아야 한다.
- ③ 교복 착용 시기는 기후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하여 공고하며, 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단, 실내에서는 방한복과 목도리를 착용하지 않는다.)
- ④ 복장에 잘 어울리는 단정한 신발을 착용한다.
- ⑤ 신입생은 입학식 날부터 교복을 착용한다.

⑥ 두발 및 용모는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두발은 단정히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가.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한다.

나. 여학생은 머리 길이는 췌골까지이며, 어깨에 닿으면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커트는 금한다.)

2. 파마, 고데기 사용, 염색, 탈색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귀고리, 팔찌, 문신 등 일체의 장신구 착용을 금한다.

4. 기초화장(스킨, 로션 등)을 제외한 화장품(입술화장, 비비크림, 마스크라, 틴트, 색깔 있는 립밤 등)이나 매니큐어, 속눈썹, 서클렌즈 사용 등은 모두 금지한다. 단, 얼굴색이 하얗게 되는 기능이 없는 선크림은 허용한다.

⑦ 여학생은 동복 경우 학생용 검정 스타킹 또는 타이즈류, 살구색 스타킹을 착용하며, 하복은 양말 착용을 기본으로 한다.

⑧ 전자기기의 사용은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기는 입교 시 일괄 담임이 거두어서 관리한다.

2. 전자기기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학교생활에 어울리는 필수적인 물품만 소지하고, 다른 학생을 해치고자 하는 물품이나 흉기는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2. 학생은 음란물(음란 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 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생들 입회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부 교사들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주변 교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제2절 교외 생활

제17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활한다.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③ 교내 대회나 행사 이외의 교외 행사활동에 참가할 때는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학부모 동의를 얻어 실시하며,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

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5장 학생회

제19조(목적) 본회는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2조(학생회 임원 구성) 학생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학년 2인, 3학년 2인으로 구성한다.

제23조(학생회 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2학년 부회장이 맡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장 학생회 선거

제24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선출 시기 및 공고) 학생회의 선거는 당해 학년도 12월에 실시하며, 선거의 공고일은 선거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이 공고한다.

제26조(선출 방법) 회장은 전교생이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7조(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28조(후보 자격)

- ①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③ 교과성적 평균 석차 40% 이내인 자

제29조(후보 등록 방법 및 시기)

- ①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학생 추천서 1부(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
 - 3. 담임교사 추천서 1부
- ② 입후보자 등록 후 제28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 기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등록, 공고한다.

제31조(선거운동원)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10명까지 둘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제32조(벽보)

- ① 입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2매를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벽보의 규격은 4절지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벽보를 기호순으로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한다.

제33조(금지사항) 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 ②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 ④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규정한 경우

제34조(합동 소견 발표회) 소견발표는 선거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교생이 모인 장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발표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방송으로 실시한다.)

제35조(소견문) 소견 발표회에서 발표한 소견문의 분량은 후보자 1인당 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정도(200자 원고지 5~7장 이내)로 한다.

제36조(투표 방법 및 투표소)

-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 ② 투표 장소는 학년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제37조(투표참관인)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선거관리위원 3명(1·2·3학년 각 1명)으로 한다.
- ②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고, 잘못이나 부정이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개표)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곧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개하여 행한다.

제3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① 지정된 투표용지나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기표란에 기표하지 아니한 것
- ③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 ④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선상에 표기한 것)
-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것

제40조(당선확정)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는 학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학생부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41조(선거관리위원 구성)

- ① 학교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 중 10명 이내로 선임한 후 선거일 공고 일에 구성하고 선거 업무가 끝나면 해체된다.
- ② 학교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42조(선거관리위원 임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원할 수 없으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중립을 지켜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 ① 투표자 명부작성
- ② 입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및 개표에 관한 일

제7장 학급회

제43조(회칙)

- ① 본회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며, 급우 상호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여 명량한 학급 생활을 이루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 학급원이 회원이 되며, 담임교사는 고문이 된다.

제44조(임원의 임무와 임기) 본회의 임원과 임무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반장: 학급의 기획 및 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학급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반장: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부재 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 각 부서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서의 계획 및 관리를 하고, 부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팀장: 각 팀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팀원을 관리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정하고, 2학기 연임이 가능하다.

제45조(임원 선출) 학급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정·부반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최다득점자로 한다.

제8장 학생지도

제46조(안전지도)

- ①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 ②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47조(학생 상담) 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이탈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을 해야 한다.

제48조(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 ①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 ②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 ③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9조(자살예방지도)

- ①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50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 ① 담임 훈화 및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 ②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제51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 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담임 훈화 및 관련 교과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부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52조(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3조(체벌 금지 및 훈육·훈계 방법) 학생을 지도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지한다.

제5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5조(그린마일리지 제도)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학교 문화조성과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를 위해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① 상점의 부여를 통해 칭찬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벌점 부여를 통해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기르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학생들의 상점 위주의 운영을 권장하며, 평점은 상(3점), 중(2점), 하(1점)로 단순화하며 반드시 내용을 기술 입력한다.

③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모범상(선행, 효행, 봉사) 추천(심의)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④ 별도로 정한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자에게는 교내봉사, 교내 특별교육,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⑤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평점(상점, 벌점)을 통하여 통계 처리하여 운영한다.

⑥ 평점을 부여할 권한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⑦ 그린마일리지 제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점기준

구분	코드	학교 생활	비고	상점
담임	A1	학교동 학생 안전사고 신고		2
	A2	전반적인 학급 생활에 모범이 된 학생 (2명 이하 주1회 선발)	주변, 교실청소, 봉사, 학급 부서 역할 등	2
	A3	자습시간 태도가 남달리 모범적인 경우 (2명 이하 주1회 선발)		1
	A4	급우들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추천된 경우 (주1회 선발)		2
구분	코드	기숙사 생활	비고	상점
사감	A5	위험한 곳에 가거나 위험한 행동 신고		2
	A6	침대 및 주변이 남달리 정돈 되고 깨끗한 경우		1
	A7	숙소가 청결할 경우	매일 숙소 추천	1
	A8	학생 안전사고 신고		2
	A9	모범 숙소원으로 추천된 경우 (주1회 선발)		2
	A10	모범 숙소장으로 추천된 경우 (주1회 선발)		2

벌점기준

구분	코드	학교 생활	비고	벌점
담임·학생부	B1	자습시간, 수업태도 불량으로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은 경우	3회 이상의 지적	2
	B2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에 휴지나 이물질 등을 투입하는 경우		2
	B3	엘리베이터 앞에서 심하게 장난하는 경우		2
	B4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1
	B5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2
	B6	위험한 장난 및 행위를 하는 경우		3
	B7	실내에서 뛰는 경우		1
	B8	실외 내리막길이나 위험한 구간에서 뛰는 경우		1

	B9	지각하는 경우(등교, 수업, AS시간, 채플)		2
	B10	복장을 위반하는 경우		2
	B11	금품을 거래한 경우		2
	B12	두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벌점 및 규정에 따른 두발 정리)		2
구분	코드	기숙사 생활	비고	벌점
사감	B13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2
	B14	타 숙소에 허락없이 침입한 경우		2
	B15	기숙사 입실 시간을 어기는 경우		2
	B16	기숙사 내 소란을 피우는 경우		2
	B17	기숙사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
	B18	침대 및 숙소 정리정돈이 불량한 경우		2
	B19	한 침대에 두 명 이상 올라가는 경우		3
	B20	기숙사 기물을 파손한 경우(벌점 및 변상)		2

제9장 징계

제56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57조(징계의 심의)

- ①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내봉사는 1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교내 특별교육 이수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등교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전학처분
- ⑤ 퇴학처분(제적 및 자퇴)

제60조(징계의 방법)

- ① ‘교내봉사’와 ‘교내특별교육’은 학생을 등교시켜 담임과 학생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 ② 등교정지 이상의 징계 기간에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기타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징계가 확정되면 학부모를 소환하여 공동 선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만약 학부모가 내교하지 않을 경우 징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징계 기간에 있는 학생이 본인의 과오를 충분히 반성하고 개전의 행동이 현저할 때에는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은 징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징계 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되며 성실히 징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결석, 결과, 조퇴, 지각 등) 해당 일자 만큼 소급하여 기간이 가중된다.
- ⑥ 징계기간 중에는 매일 성찰문과 부과된 과제를 담임을 거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의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봉사

- 1. 학반 담임교사 및 학생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 2. 지도내용은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구정비, 도서정비, 기타 필요한 내용으로 지도한다.

② 교내 특별교육

- 1.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수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2.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의 상태를 알리고, 학생지도에 협조를 요청한다.
- 3. 학반 담임교사 및 학생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 4. 지도내용은 교내봉사, 심리상담, 인성관련 영상시청이나 독서, 성찰문 기록 등으로 한다.

③ 출석정지

- 1. 선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다.
- 2. 출석 정지기간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며, 특기 사항란에는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단,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시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전학

- 1. 개전의 가망이 없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도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2. 전학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퇴학

- 1. 학교장이 퇴학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 2.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3. 징계대상자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 선도협의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학생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다.

제62조(심의 확정) 학생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3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4조(징계유보) 교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되며 공휴일도 제외한다.

제65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교내 특별 교육	등교 정지	전학	퇴학
1	벌점(월 단위 산출)이 30점 이상인 학생(1회)	○				
2	벌점(월 단위 산출)이 30점 이상인 학생(2회)		○			
3	벌점(월 단위 산출)이 30점 이상인 학생(3회)			○		
4	인장, 문서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5	교권 침해 및 모독에 해당하는 행위		○	○	○	○
6	위험 물품을 소지한 학생(흉기 및 위험한 물건)		○	○	○	○
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8	교내·외에서 이성 교제를 한 학생		○	○	○	○
9	정기고사(공식적인 평가) 중 부정행위 또는 그 행위를 방조한 학생		○	○	○	
10	교육활동을(수업, 시험, 행사 등) 무단으로 거부한 학생		○	○	○	○
11	시험문제 누설 또는 시험지를 절취한 학생				○	○
12	무단으로 기숙사 이탈한 학생		○	○	○	○
13	교내·외 술과 담배의 소지 및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14	이성의 기숙사 출입한 학생			○	○	○
15	금품을 갈취, 절취한 학생		○	○	○	○
16	학교폭력으로 타 학생에게 피해를 준 학생		0	○	○	○

- ① 벌점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누적 합산한다.
- ② 각 항목별 징계 수위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위 징계기준 이외의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 징계기준과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를 부여한다.

제10장 현장 교육

제67조(목적) 체험,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이하 현장 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 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제68조(계획 수립)

- ① 현장교육 수립 시 사전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 활동이 되도록 한다.
- ② 현장교육 계획 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가급적 주제별, 소규모 단위 활동이 되도록 한다.
 2. 다수 차량 운행을 가급적 지양한다.
 3. 가급적 행락철 등 특정시기, 장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4. 교육프로그램, 안전사고 예방 대처방안을 포함한다.

- ③ 현장 교육은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69조(사전답사) 현장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여야 한다.

제70조(계약) 학교의 장은 장소, 시설, 차량을 계약할 시 법적인 하자 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교육 및 인솔자)

- ① 학교의 장은 현장 교육을 실시함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차량 이동시 유관 기관에 안전 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인원의 인솔 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여 각자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② 인솔 책임자는 교육 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 ③ 돌발적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2조(학생 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 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 ② 교육 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 ③ 부득이한 경우로 교육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후평가) 현장교육 종료 후 학생들이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제11장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제74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학습, 가정학습 등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말한다.

제75조(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족동반, 친인척 방문 등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6조(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및 가정학습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하며, 1회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간 출석 인정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학기초, 학기말, 정기고사 기간 등)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7조(절차)

① 보호자의 신청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이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4세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인터넷 혹은 모바일앱)으로 한다.

②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들만의 교외체험학습은 불허한다. 다만,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대리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시 대리 인솔 위임장 및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과보고서 제출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세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인터넷 혹은 모바일앱)으로 제출하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사진을 필수 첨부한다.

제78조(미인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2장 개정방법

제79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80조(기타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정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